

# 인천광역시서구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http://www.seo.incheon.kr/>

선	기관위원장
람	

제1268호 2017. 6. 5(월)

## 차 례

### 고 시

-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61호 인천도시관리계획(검암1지구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1
-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62호 인천도시관리계획(연희1.2지구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3
-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63호 인천도시관리계획(검단일반산업단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5
-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64호 인천도시관리계획(시설:도로, 주차장)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8
-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65호 인천도시관리계획(검암2지구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10
-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66호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고시 ----- 12

## 차 례

### 공 고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741호 자동차관리법 위반에 따른 운행정지명령  
차량 공고 ----- 14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742호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 17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745호 인천광역시 서구 긴급복지 위기상황 인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19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770호 대곡2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완료 공고 ----- 26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2017 - 61호

## 인천도시관리계획(검암1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인천도시관리계획(검암1지구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고시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서류는 서구청 도시개발과(☎ 560-4763)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7. 6. 5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결정(변경)취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마목의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
2. 위 치 : 서구 검암동 611-7, -8번지
3.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조서
  -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변경없음)
  - 나.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변경없음)
  - 다.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구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 단독주택용지(C용도)의 가구 및 획지 결정(변경) 조서

기 정					변 경				
가구 번호	가구면적 (㎡)	획지		분할가능 획지수	가구 번호	가구면적 (㎡)	획지		분할가능 획지수
		위치	면적(㎡)				위치	면적(㎡)	
29	3,590.7	1-8	208.0	-	29	3,590.7	1-8	416.0	-
		1-9	208.0	-					

## ○ 단독주택용지(C용도)의 가구 및 획지 결정(변경) 사유서

가구번호	위치	변경내용	변경사유
29	1-8, 1-9 → 1-8	획지합병	효율적인 토지이용

라.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  
관리계획결정(변경) 조서 (변경없음)

마.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변경없음)

4. 고시도면 : 별첨(비치된 장소의 고시도면과 같음 : 구보계재 생략)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2017 - 62호

## 인천도시관리계획(연희1·2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인천도시관리계획(연희1·2지구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고시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서류는 서구청 도시개발과(☎ 560-4763)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7. 6. 5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결정(변경)취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마목의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
2. 위 치 : 서구 연희동 741-14, -15번지 및 심곡동 325-9번지
3.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가. 용도지역·용도지구의 세분 및 세분된 용도지역·용도지구간의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변경없음)
  - 나.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변경없음)
  - 다.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구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변경)

## ○ 단독주택용지의 가구 및 획지 결정(변경) 조서

기 정				변 경					
가구 번호	가구면적 (㎡)	획 지		비 고	가구 번호	가구면적 (㎡)	획 지		비 고
		위치	면적 (㎡)				위치	면적 (㎡)	
1-18	9,922.6	5	188.4		1-18	9,922.6	5	338.0	
		6	149.6						
1-28	12,720.8	8	1,581.5		1-28	12,720.8	8-1	774.2	
				8-2			807.3		

## ○ 단독주택용지의 가구 및 획지 결정(변경) 사유서

가구번호	위 치	변경내용	변 경 사 유
1-18	5, 6 → 5	획지합병	효율적인 토지이용
1-28	8 → 8-1, 8-2	획지분할	효율적인 토지이용

라.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조서(변경없음)

마.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변경없음)

4. 고시도면 : 별첨(비치된 장소의 고시도면과 같음 : 구보계재 생략)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2017 - 63호

## 인천도시관리계획(검단일반산업단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인천도시관리계획(검단일반산업단지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고시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서류는 서구청 도시개발과(☎ 560-4763)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7. 6. 5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결정(변경)취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

2. 위 치 : 서구 오류동 1639-12, -14번지

3.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변경)

## ○ 기반시설(주차장) 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위 치	면 적(m <sup>2</sup> )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	3,300.4	-	3,300.4		
폐지	㉠	주차장	서구 오류동 410-37 일원	3,300.4	감)3,300.4	-	인고-366 (08.12.29)	일반공업 지역
신설	㉡	주차장	서구 오류동 1639-12	-	증)1,650.2	1,650.2	-	일반공업 지역
신설	㉢	주차장	서구 오류동 1639-14	-	증)1,650.2	1,650.2	-	일반공업 지역

## ○ 기반시설(주차장) 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	주차장	주차장㉠(3,300.4m <sup>2</sup> ) 폐지	주차장 건설 활성화 및 사업시행의 구분을 위해 폐지  주차장 건설 활성화 및 사업시행의 구분을 위해 신설
㉡	주차장	주차장㉡(1,650.2m <sup>2</sup> ) 신설	
㉢	주차장	주차장㉢(1,650.2m <sup>2</sup> ) 신설	

## 나.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변경)

## ○ 주차장 획지계획 변경 조서

도면 번호	가구 번호	기 정			변 경			비 고
		면적(m <sup>2</sup> )	획 지		면적(m <sup>2</sup> )	획 지		
			위치	면적(m <sup>2</sup> )		위치	면적(m <sup>2</sup> )	
주차장 (P)	P3	3,300.4	①	3,300.4	3,300.4	① ②	1,650.2 1,650.2	획지 분할

## ○ 주차장 획지계획 변경 사유서

가구번호	위 치	변경내용	변경사유
P3	P3-① → P3-①, P3-②	P3-①획지(3,300.4m <sup>2</sup> )를 P3-①획지(1,650.2m <sup>2</sup> )와 P3-②획지(1,650.2m <sup>2</sup> )로 획지분할	주차장 건설 활성화

다.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변경)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기 정	변 경			
주차장 (P)	P1 ~ P7 ①	P1 ①	용 도	허용 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차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 (주차전용건축물 및 부속용도 포함)</li> <li>근린생활시설 도입시 비율은 연면적의 30% 이내 [근린생활시설 허용용도 :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 제외), 문화 및 집회시설(종교집회장 제외), 판매시설(상점 및 이와 유사한 것에 한함), 운동시설(운동장, 골프연습장 제외),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li> </ul>
		P2 ①			
		P3 ①, ②	건폐율	90% 이하	
		P4 ①	용적률	900% 이하	
		P5 ①	높이(층)	-	
		P6 ①	형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차전용건축물 건립시 지상부에 일부 주차장 설치</li> <li>주차구획은 교통영향평가 협의결과를 반영할 것</li> <li>단, 불가피한 경우는 관리권자의 승인을 통하여 변경가능</li> </ul>	
		P7 ①			

라.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변경없음)

4. 고시도면 : 별첨(비치된 장소의 고시도면과 같음 : 구보게재 생략)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2017 - 64호

## 인천도시관리계획(시설:도로,주차장)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인천도시관리계획(시설:도로,주차장)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고시 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 합니다.

관계서류는 서구청 도시개발과(☎ 560-4762)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7. 6. 5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결정(변경)취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다목에 해당하는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2. 위 치

- 도시계획시설(도로:중로2류500호선) : 서구 심곡동 129-32번지 일원
- 도시계획시설(주차장) : 서구 가좌동 145-43번지 일원

3. 면적 또는 규모

○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폐지	중로	2	500	18	국지 도로	295	광로3-32호선	광로3-9호선	국지 도로	-	2010.06.14.	-

○ 주차장 결정(변경) 조서

구분	시설명	위 치	면 적 (㎡)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폐지	주차장	서구 가좌동 145-43번지 일원	992.1	감)992.1	-	2009.12.09.	

○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중로2-500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변경 : 노선폐지</li> <li>- 연장(L) : 295m</li> <li>- 폭(B) : 18m</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우선해제시설 분류에 따른 해제절차 이행</li> <li>광3-32호선 개통, 청라지구 및 인천아시아게임 주경기장 건설 등 주변 여건 변화에 따라 도로 기능 상실에 따른 노선 폐지</li> </ul>

○ 주차장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	주차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변경 : 주차장폐지</li> <li>- 면적 : 992.1㎡</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우선해제시설 분류에 따른 해제절차 이행</li> <li>공공시설(가좌건강관리센터) 입지에 따른 주차장 조성 미추진 및 사업시기 불투명</li> </ul>

4. 지형도면 : 게재생략(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http://luris.mltm.go.kr/> 열람 가능)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2017 - 65호

## 인천도시관리계획(검암2지구 지구단위계획)

###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인천도시관리계획(검암2지구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고시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서류는 서구청 도시개발과(☎ 560-4763)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7. 6. 5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결정(변경)취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마목의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

2. 위 치 : 서구 검암동 492-2, -6번지

3.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변경없음)

나.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변경없음)

다.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구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 근린생활시설용지(B용도)의 가구 및 획지 결정(변경) 조서

기 정					변 경(안)				
가구 번호	가구면 적 (㎡)	획지		분할가능 지 수	가구 번호	가구면 적 (㎡)	획지		분할가능 지 수
		위치	면적(㎡)				위치	면적(㎡)	
1	2,050.4	2	1,416.6	4	1	2,050.4	2-1	803.6	2
							2-2	613.0	2

## ○ 근린생활시설용지(B용도)의 가구 및 획지 결정(변경) 사유서

가구번호	위치	변경내용	변 경 사 유
1	2 → 2-1, 2-2	획지분할 가능선 변경 및 획지분할	효율적인 토지이용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4항제3호에 따른 경미한 변경

라.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  
관리계획결정(변경) 조서 (변경없음)

마.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변경없음)

4. 고시도면 : 별첨(비치된 장소의 고시도면과 같음 : 구보계재 생략)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2017 - 66호

##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4항, 제24조 제1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변경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 6. 2

###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 부여·변경 도로명주소 : 인천 서구 봉오대로 77 외 75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부여(변경)사유	도 로 명 고 시 일	도 로 명 부 여 사 유
		별 도 열 략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시 서구청 토지정보과(☎560-4830)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http://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17. 06. 02일자로 고시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 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7 - 741호

## 자동차관리법 위반에 따른 운행정지명령 차량 공고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자동차의 운행정지 등)제1항 위반차량에 대하여 자동차 소유자의 운행정지 요청에 따라 동법 시행규칙 22조(운행정지명령 대상 자동차의 확인)에 의거 운행정지명령대상 차량으로 확인되었기에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자동차의 운행정지 등)제3항제4호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7. 5. 31

###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공 고 기 간 : 2017. 5. 31. ~ 2017. 6. 14.(15일간)

2. 공 고 내 용

1. 행정처분 제목	자동차관리법 위반에 따른 운행정지명령			
2. 대상차량	등록번호	11고2545 외 18대 (붙임 참조)		
	차 명			
3. 운행정지사유	소유자의 요청 등			
4. 법적근거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자동차의 운행정지 등)			
5. 관할관청	기관명	인천광역시 서구청	담당부서	교통민원과
	주소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299(심곡동) (☎ 032-560-4877, FAX 032-560-2794)		

### 3. 유 의 사 항

- 1)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자동차 사용자가 아닌 자가 자동차를 운행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2) 운행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운행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3) 운행정지명령에도 불구하고 계속 운행하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말소등록이 가능하며 말소 등록된 자동차(무등록 자동차)를 운행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4)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 서구청 교통민원과 차량관리팀 (☎ 032-560-4877)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운행정지 명령 대상 자동차

연번	자동차등록번호	소유자	운행정지명령 등록일	비고
1	11고2545	김동*	2017.05.26	
2	49고5345	양덕*, 문윤*	2017.05.25	
3	인천34더2600	안경*	2017.05.25	
4	42더5640	김선*	2017.05.23	
5	인천7더3383	박국*	2017.05.22	
6	52무2460	한기*	2017.05.22	
7	08거8522	박국*	2017.05.22	
8	57노3718	조승*	2017.05.22	
9	34머7797	최기*	2017.05.22	
10	42노9493	조승*	2017.05.22	
11	45누5375	전소*	2017.05.19	
12	11러5345	엄수*	2017.05.19	
13	18거1710	김부*	2017.05.18	
14	07우3665	김부*	2017.05.18	
15	인천70나3023	천승*	2017.05.17	
16	43마3529	박성*	2017.05.15	
17	45로2313	김상*	2017.05.15	
18	16부2983	가현엔프*(주)	2017.05.15	2017.05.24. 해제
19	27루2144	이종*	2017.05.15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7 - 742호

##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 규정에 따라 2017. 1. 1기준 개별공시지가를 다음과 같이 결정·공시하오니,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께서는 기간 내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 5. 31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 1.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가. 결정·공시대상

- 2017. 1.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61,101필지)

나. 결정·공시일 : 2017. 5. 31

다. 결정·공시내용 : 필지별 m<sup>2</sup>당 가격

라. 결정·공시내용 열람

- 서구청 토지정보과

- 인천광역시 한국토지정보시스템(<http://klis.incheon.go.kr/sis>) ⇒

「부동산 정보조회」 ⇒ 「개별공시지가」

## 2. 이의신청

가. 대 상 : 결정·공시한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나. 신청기간 : 2017. 5. 31 ~ 6. 29.

다. 신청인 : 토지소유자 또는 그 밖의 이해관계인

라. 제출서류 :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

※ 서구청 홈페이지(<http://www.seo.incheon.kr/>) ⇒ 「전자민원」  
⇒ 「민원사무편람 서식」 ⇒ 「지적/부동산」 란에 게재

마. 접수처 : 서구청 토지정보과

바 . 접수방법

- 방문접수, 우편접수(마감일인 2017년 6월 29일 까지 소인분에 한  
함) 및 민원24 홈페이지(<http://www.minwon.go.kr/>) 접수

사.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

- 결정지가의 적정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감정평가업자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처리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통보

## 3. 문의사항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서구청 토지정보과 (☎ 560-4840)로 문의하시기를 바랍니다.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7 - 754호

「인천광역시 서구 긴급복지지원 위기상황 인정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사유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인천광역시서구자치법규안입법예고에 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 6. 5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 인천광역시 서구 긴급복지 위기상황 인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1. 개정이유

- 「긴급복지지원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를 정비하여 위기상황에 처한 복지사각지대 대상자를 지역 특성에 따라 효과적, 체계적, 상시적으로 발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중 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용어를 명확하게 정비함.(안 제3조 제5호, 제6호, 제7호)
- 위기상황의 사유에 “사례관리 대상자 중 사례회의를 통하여 생계가 어렵다고 관련 부서에서 추천하는 경우” 를 신설함.(안 제3조 제11호)
-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에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른 범죄 피해자로서 관할 경찰서장이 의뢰한 사람 중에서 긴급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추가함(안 제3조 제12호)

## 3. 참고사항

- 가. 개 정 안 : “별지 참조”
- 나. 신·구조문대비표 : “별지 참조”
- 다. 예 산 수 반 사 항 : “해당 없음”
- 라. 관계 법령 발췌 : “별지 참조”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2017-754호

## 인천광역시 서구 긴급복지지원 위기상황 인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서구 긴급복지지원 위기상황 인정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경우”를 “경우.”로 하고, 같은 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본인이 포기하거나 자활 사업 참여 거부 등의 이유로 보장중지된 경우는 제외한다.

제3조제6호 중 “수도”를 “실직 등 위기 사유로 수도”로 하고, 같은 조 제 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실직 등 위기 사유로 3개월 이상 월세가 체납되어 생계가 어렵고, 월세 차감 후 보전되어 있는 보증금이 주거지원 금융재산 이하인 경우

제3조제11호를 제13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11호 및 제1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사례관리 대상자 중 사례회의를 통하여 생계가 어렵다고 관련 부서에서 추천하는 경우
12.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른 범죄피해자로서 관할 경찰관서로

부터 통보 받은 사람 중 그 피해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범죄피해로 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다만, 동일 범죄피해로 다른 기관에서 이미 지원을 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이 조례에서 “위기상황”이란 본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구성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것을 말한다.</p> <p>1. ~ 4. (생   략)</p> <p>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각종 급여 신청자 및 수급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u>경우 &lt;단서 신설&gt;</u></p> <p style="padding-left: 2em;">가. ~ 다. (생   략)</p> <p>6. <u>수도, 가스, 전기 등의 사용료가 3개월 이상 체납하거나, 중단되어 생계가 어려운 경우</u></p> <p>7. <u>3개월 이상 월세 체납으로 인해 강제로 주거지에서 나가게 되는 경우</u></p>	<p>제3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 ----- ----- ----- ----- -----.</p> <p>1. ~ 4. (현행과 같음)</p> <p>5. ----- ----- ----- <u>경우. 다만,</u> <u>본인이 포기하거나 자활 사업 참여 거부 등의 이유로 보장 중지된 경우는 제외한다.</u></p> <p style="padding-left: 2em;">가. ~ 다. (현행과 같음)</p> <p>6. <u>실직 등 위기 사유로 수도</u>----- -----</p> <p>7. <u>실직 등 위기 사유로 3개월 이상 월세가 체납되어 생계가 어렵고, 월세 차감 후 보전되어 있는 보증금이 주거지원 금융재산 이하인 경우</u></p>

8. ~ 10. (생략)

<신설>

11. (생략)

<신설>

8. ~ 10. (현행과 같음)

11. 사례관리 대상자 중 사례회의를 통하여 생계가 어렵다고 관련 부서에서 추천하는 경우

13. (현행 제11호와 같음)

12.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른 범죄피해자로서 관할 경찰관서로부터 통보 받은 사람 중 그 피해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범죄피해로 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다만, 동일 범죄피해로 다른 기관에서 이미 지원을 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 관 계 법 령

###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 2017.3.14.] [법률 제14583호, 2017.3.14., 일부개정]

법무부(인권구조과) 02-2110-3263

**제3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범죄피해자"란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를 말한다.
  2.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이란 범죄피해자의 손실 복구, 정당한 권리 행사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수사·변호 또는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3.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이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을 말한다.
  4. "구조대상 범죄피해"란 대한민국의 영역 안에서 또는 대한민국의 영역 밖에 있는 대한민국의 선박이나 항공기 안에서 행하여진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해치는 죄에 해당하는 행위(「형법」 제9조, 제10조제1항, 제12조, 제22조제1항에 따라 처벌되지 아니하는 행위를 포함하며, 같은 법 제20조 또는 제21조제1항에 따라 처벌되지 아니하는 행위 및 과실에 의한 행위는 제외한다)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장애 또는 중상해를 입은 것을 말한다.
  5. "장애"란 범죄행위로 입은 부상이나 질병이 치료(그 증상이 고정된 때를 포함한다)된 후에 남은 신체의 장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6. "중상해"란 범죄행위로 인하여 신체나 그 생리적 기능에 손상을 입은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 ②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에 범죄피해 방지 및 범죄피해자 구조 활동으로 피해를 당한 사람도 범죄피해자로 본다.

**제4조(국가의 책무)** 국가는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할 책무를 진다.

1.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체제의 구축 및 운영
2.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실태조사, 연구, 교육, 홍보
3.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관계 법령의 정비 및 각종 정책의 수립·시행

**제5조(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지방자치단체는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국가의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시책이 원활하게 시행되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30.>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7 - 770호

## 대곡2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완료 공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인천광역시 서구 지적재조사사업 대곡2지구의 경계가 확정되어 같은 법 제2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7. 6. 1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사업명 : 인천광역시서구 지적재조사사업 대곡2지구
2. 사업시행자 :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3. 사업위치 : 인천광역시 서구 대곡동 127일원
4. 사업기간 : 2015. 3월 ~ 2017. 6월
5. 공고기간 : 2017. 6. 1. ~ 2017. 6. 15. (15일간)
6. 토지조서 : 인천광역시 서구청(지적재조사팀)에 비치

구 분	종전지적		확정토지		증감현황		비고
	필지수	면적(m <sup>2</sup> )	필지수	면적(m <sup>2</sup> )	필지수	면적(m <sup>2</sup> )	
대곡2지구	637	1,334,888	701	1,339,174.1	증64	증4,286.1	

7. 조정금 조서 : 인천광역시 서구청(지적재조사팀)에 비치

8. 관계서류의 열람

가. 관계서류 : 새로 작성한 지적공부, 경계점표지등록부, 측량성  
과결정을 위한 취득한 측량기록물 등

나. 열람기간 : 2017. 6. 1. ~ 2017. 6. 15. (15일간)

다. 열람장소 : 인천광역시 서구청 토지정보과(☎ 560-4662)

(구보게재 생략)